

『인천광역시 양곡부산물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09년 8월 27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양곡부산물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최근 가속화 되고 있는 국내 사료가격의 상승으로 사료 및 유기질 비료화를 재생할 수 있는 양곡부산물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곡부산물 처리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정의, 책무를 정함. (안 제1조~제4조)
- 나. 양곡부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재정 지원등 (안 제6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9일(수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(참조 :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32,

팩스 032-440-876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
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: ○성 명: ○연락처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인천광역시 양곡부산물 처리지원 관한 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양곡부산물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내 사료가격 상승과 더불어 사료 및 유기질 비료화를 재생할 수 있는 양곡부산물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하여 양곡 가공 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우리시 농업인에게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양곡”이란 미곡·맥류 기타 곡류·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·분말·전분류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양곡가공”이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양곡부산물”이란 양곡의 제조·가공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.

제3조(시의 책무) ① 시는 효과적인 양곡부산물 처리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, 우리시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양곡부산물 처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는 양곡부산물 처리에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자의 책무)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곡부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시가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자는 관내 농축관련단체, 축산농가,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등 농업인에게 양곡부산물 등이 우선 공급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5조(교육 및 홍보) 시는 양곡부산물 처리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사업 및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재정지원 등) ① 시는 사업자가 양곡부산물을 우리시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할 경우 양곡부산물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는 양곡부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민·사업자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·운영, 조사·연구 또는 기술개발등에 필요한 정보·기술·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지방자치법 ○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